

부 산 가 정 법 원

제1가사부(항고)

결 정

사 건 2016브20013 양육비

청구인, 항고인 갑 (1971년생, 여)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대방, 피항고인 을 (1968년생, 남)

주소

등록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 건 본 인 1. A (2001년생, 남)

2. B (2004년생, 여)

사건본인들 주소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제1심 심 판 부산가정법원 2016. 7. 17.자 2015느단200247 심판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고취지

1. 청구취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청구인은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사건본인 A의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A이 20세에 이르기까지 월 912,000원씩을, 사건본인 B의 장래양육비로 사건본인 B이 20세에 이르기까지 월 822,600원씩을 각 지급하라.

2. 항고취지

제1심 심판 중 과거양육비에 관한 청구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청구인이 제1심 심판 중 과거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에 관해서만 판단한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1. 5.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7. 2.경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두 사람은 위 협의이혼 무렵인 2007. 1. 8. 광명시 소재 빌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에서 위 빌라 임차 당시 상대방의 모(병)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5,500만 원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청구인은 3,500만 원, 상대방은 2,000만 원으로 한다. 친권자는 상대방, 양육자는 청구인으로 한다. 양육비는 상대방이 빚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2,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상대방은 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혼 후 보험설계사로 일하여 왔고, 2014년에는 3,600만 원, 2015. 5.경부터는 월 3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으며, 그 외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합계 7,70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었다.

마. 한편, 상대방은 **전자 주식회사에 근무하여 2007년과 2008년에는 연 3,000만 원 가량, 2009년에는 연 50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다.

바. 상대방은 혼인 중이던 2001. 5.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상대방의 모 병이 2002. 6. 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병은 2001. 5.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만 원)을 설정하였다가 2007. 5.경 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였다.

사. 상대방은 이혼 후인 2007. 5. 25. 광명시 소재 빌라에 관하여 상대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빌라에서 거주하다가, 2013. 4. 30.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모와 함께 거주 중이다.

3. 판단

가.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진 후 일방이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정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하였던 이 사건 합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모두 고려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합의가 상대방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상대방의 순재산 5,500만 원(= 광명시 소재 빌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7,500만 원 - 상대방 모에 대한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등의 협의를 하여, 결국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명목으로 상대방의 순재산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던 점, 청구인은 혼인 중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상대방의 모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위 아파트가 상대방의 모(병)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협의이혼 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까지 8년 이상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거양육비 부담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그 변경을 요할 만큼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킨다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양육비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심판은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9. 20.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정현숙

 판사 지현경